
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

1.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

신 청 인		원천징수의무자		
성 명		법인명		
주민등록번호		대 표 자		
주 소		사업자등록번호		
직 책		사업장소재지		
		벤처기업확인내역	번 호	평가기관
			확인일자	유효기간

2.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
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	① 행사한 수량	② 1주당 행사가액	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	④ 행사이익 [①×(③-②)]

3. 납부특례 신청내용

☐ 원천징수 제외	☐ 분할납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작성 방법

-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.
-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,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하며, 둘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표시합니다.